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86

발의연월일: 2025. 2. 4.

발 의 자:양부남・이건태・장종태

김문수 · 김한규 · 권향엽

이개호 · 조인철 · 이해식

채현일 • 전진숙 • 김현정

윤호중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어 지역을 순찰하면서 범죄신고,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운전 캠페인, 연탄나눔, 결손아동 지원 등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지역사회에 필요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음.

이에 2022. 4. 26. 현행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,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로 미성년자가 포함되면서 기존에 대원으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음.

자율방범대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지역의 결손가정이 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면서 교육적 측면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,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 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 제1호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1호 중 "피성년후견인"을 "피성년후견인.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친권자가 모두 자율방범대원이며 미성년자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	제5조(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
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등) ①
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	
범대원이 될 수 없다.	
1. 미성년자 및 <u>피성년후견인</u>	1 <u>피성년후견인.</u>
<단서 신설>	<u>다만, 친권자가 모두 자율방</u>
	범대원이며 미성년자의 자율
	방범대 활동에 동의한 경우에
	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